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개정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 12. 2.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에게 명령하는 사항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수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와 그 어선의 승객(이하 “낙시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과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
- ②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선내기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22:00 까지로 한다. 단,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이상 선내기 낙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낙시어선은 야간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1호에서 정한 어로·항해 금지해역에서의 어로·항해 금지시간(22:00~03:00) 준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 어업무선국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 가. 사전 유선신고 미이행으로 군부대 해안경계 작전간 오인관측/사격발생시 모든 인명, 장비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 외 야간 출입항 시에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4.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 중 연안에서 3마일 이내 어로 및 조업 금지

제4조(영업구역)

-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관할 수역으로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부산항 묘박지 내의 해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호구역 및 제한·통제구역
- ③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모든 도서 및 갯바위,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외 지역 중 소유자나 관리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관리청이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VHF (DSC) 통신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2.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

제5조(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 연락체계 (선주·선원의 전화번호 및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며,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군 관할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체중)을 낚시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체중)의 수산동물을 포획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류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또는 VHF(DSC)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된다. 단, 출·입항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⑦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 통신, 기관, 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⑧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에 앞서 본 고시내용을 낚시객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하며, [별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준수사항을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낚시어선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⑨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낚시객의 준수사항)

- ① 낚시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낚시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포획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체중)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5. 낚시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6. 낚시객은 낚시어선 승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낚시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5. 폭발물, 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6.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7.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입하는 행위

제7조(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6-74호(2006.08.04.)는 폐지한다.
-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155호(2012.12.24.)는 폐지한다.

[별표]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방법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흑색

2) 바탕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백색

낚시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장소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문

[붙임]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2) 승객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체중)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 3) 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 5) 승객은 낙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 6) 승객은 승선시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7)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정원초과 승선 요구 행위

나. 낙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 위반 행위

다. 음주 및 질서문란 행위

라. 기물파손 행위

마. 폭발물 등 위험물 반입 행위

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요구

사.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 반출입 행위